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규칙심의회,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  
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

### 1. 개정이유

법제처 「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」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탁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어린이집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은 『영유아 보육법』 제2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, 우리 구 조례 제22조 제2항은 ‘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.’라고 규정하여 수탁을 영구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(안 제22조제2항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여성가족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), 문의전화 : 3396-5412, FAX: 3396-8741, 메일 : soohee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  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<u>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.</u></p> <p>③~④ (생 략)</p>	<p>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삭제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